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4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4일

3. 제안이유

가. 일몰도래('24. 12. 31.) 감면 중 지속적 지원 필요 분야의 감면 연장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 명시 및 감면
관련법 분리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필요

4. 주요내용

가.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

(안 제2조~제6조, 제9조, 제12조)

※ 감면기한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 2027년 12월 31일

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 변경

(안 제7조)

다. 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 경감율 신설

(안 제11조의2~3)

라. 감면적용 관련법 분리제정에 따른 정문 정비

(안 제4조제1항)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이 개정조례안은 도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된 도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8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 및 기간을 확대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을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7건의 감면 기한 연장,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기간의 연장 및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개정은 필요함

나. 절차적 타당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1)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10회 충청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2024. 10. 18.)에서 심의·의결하여 ‘원안가결’되었음
- 그 밖에 입법예고(2024. 9. 20. ~ 10. 10. / 제출된 의견 없음) 및 조례규칙심의회(2024. 10. 23. / 특이사항 없음)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

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9. 15.]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주요 내용 검토

- 이 조례안은 1) 도세 감면 기한 연장, 2) 감면 기간 확대(기간연장 및 세율 변경), 3) 감면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문항	조 문 내 용	감면종료일		감면내용	비 고
			개정전	개정		
1) 감면 기한 연장	제2조 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	2024. 12. 31	2027. 12. 31.	취득세 (100%)	3년 연장
	제3조 제1항	시장현대화사업 감면	2024. 12. 31	2027. 12. 31.	취득세 (100%)	3년 연장
	제4조 제1항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	2024. 12. 31	2027. 12. 31.	취득세 (75%)	3년 연장
	제5조 제1항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2024. 12. 31	2027. 12. 31.	취득세 (75%)	3년 연장
	제6조 제1·2항	도시가스사업 지원 감면	2024. 12. 31	2027. 12. 31.	취득세 (50%)	3년 연장
	제9조 제2항	관광단지 투자촉진 감면	2024. 12. 31	2027. 12. 31.	취득세 (25%)	3년 연장
	제12조 제1·2항	연구개발특구 지역 감면	2024. 12. 31	2027. 12. 31.	취득세 (100%)	3년 연장
2) 감면 기간 확대	제7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7년	15년	취득세 (100%)	-
3) 감면 규정 신설	제11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감면	-	-	취득세 (100%)	법50, 조례50
	제11조의3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	-	창업·이전 취득세(100%)	법50, 조례50
			-	-	공장신·증설 취득세(75%)	법50, 조례25

1) 도세 감면 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등 7개 조항)

-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의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것임
 - 시각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자립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감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충분함

- 안 제3조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의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 낙후된 시설과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시장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함
 - 다만,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감면액과 앞으로의 3년간(2025년 ~ 2027년) 감면예상액이 없다는 것은 이 조문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인바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4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의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의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함

-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18일에 제정됨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4가 2020년 2월 18일에 삭제되었음
- 인용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정비하려는 것은 적절하나, 지난 2021년 12월 17일, 조례 일부개정 당시에 조치했어야 할 사항으로 삭제된 지 5년 가까이 되는 인용 조문의 개정은 시의적절하지 못함
 - ※ 관련 규정의 개정이 지연된 이유와 규정의 미정비로 행정상 오류 또는 발생한 문제는 없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같은 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삭제한 이유와 최근 4년간(2020년 ~ 2023년) 감면액이 없다는 것은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의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의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안 제6조**는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과 제2항에서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의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안 제3조 및 안 제4조와 같이 최근 3년(2021년 ~ 2023년)간 감면액이 없다는 것은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덧붙여, 2024년 11월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은 충북도가 유일한데 이 조문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감면 기한 조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9조**는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제2항의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의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관광단지 신설 또는 증설 사업 현황과 앞으로 추진될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최근 5년간 감면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2023년에는 감면액이 존재하지 않는데, 관광단지 투자촉진 감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함

○ **안 제12조**는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과 제2항의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의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한 지역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이 조문은 2021년 신설된 조항으로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나, 비용추계를 보면 최근 감면액은 없으며, 감면예상액도 없어 실효성이 있는 조문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 도세 감면 기간 연장 및 세율 변경(안 제7조)

- 안 제7조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조문을 전문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취득세 7년과 3년의 감면기간과 「지방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취득세 7년과 3년간의 감면기간을 각각의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15년 또는 10년간 감면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려는 것임
 - 또한, 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가목²⁾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 충북도와 인접해 있는 충남도(2020년 12월 30일 일부개정)와 강원도(2021년 10월 29일 일부개정)의 경우 이미 감면 기간에 관한 15년 또는 10년간 세액 전액 면제 규정을 두었고, 신설안인 제2항제3호의 외국인 투자비율 해당하는 취득세의 전액 면제 규정도 두고 있음
 - 비용추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약 42억원을 감면했고, 3년간 감면 예상액을 약 25억원으로 계상했는데, 도 재정 부담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9. 15.]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 3. 14.>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세 감면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및 안 제11조의3)

- 안 제11조의2는 2023년 12월 29일 신설된 법 제79조의2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에 추가로 50%를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 안 제11조의 3은 2023년 12월 29일 신설된 법 제80조의2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법 제80조의2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및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에서 정한 취득세 50% 감면에 추가로 50%를 감면하려는 것임
 - 또한,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신설 및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취득세 50%의 감면에 추가로 25%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기회발전특구로의 기업 유치와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도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된 도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8개 사항에 대한 감면기한 및 기간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함

- 다만, 안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4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안 제6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9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안 제1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등 5개 감면 규정의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감면액과 감면예상액(2025년 ~ 2027년)을 고려했을 때 기한 연장을 통한 감면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그 밖에 상위 법령 위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 법률적·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